

『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3월 29일

나. 발 의 자 : 김영길, 권재욱, 김낙관, 김춘남, 안주찬,
장미경 의원(6인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4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4월 13일

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영 길 의원

나. 제안이유

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미시
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
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상담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상담소의 기능, 상담대상 및 방법(안 제3조, 제4조)
-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」 등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3. 30. ~ 4. 6.)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」 제3조에 의거하여 근로복지 증진과 노동상담,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,
- 3,200여개 업체와 10만여명의 근로자가 있는 구미시 환경에서는 1989년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 노동상담소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,
-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, 비영리법인 및 노동단체에 업무 위탁 시 자격요건, 위탁 범위, 선정 절차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